

MCN환경하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의 법적 쟁점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요약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적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I. 서론

그동안 영상콘텐츠는 방송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돼왔다면 이제는 지능형 시스템인 인터넷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단순한 유통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YouTube) 등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방송’(이하 개인방송이라 함)이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의 다양성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되고 또 확산되고 있다. 개인방송과 비례하여 BJ(Broadcasting Jockey)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BJ와 계약을 통해 기획, 마케팅, 수익, 저작권 등을 관리해주는 MCN(Multi channel network)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MCN은 구글이 유튜브 플랫폼의 동영상 광고수익을 나누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었으나 일반화 되고 있다. 개인방송은 BJ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1인 방송은 물론 대기업 계열의 MCN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방송하는 경우로 변하고 있다. MCN은 연예기획사와 같이 BJ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도 한다.

개인방송에서 BJ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획과 제공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도 BJ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이 MCN에 합류하면서 커지고 있다.¹ 국내 MCN 시장은 2,000~3,000억원 대로 추산된다.² 시장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논란은 영역 다툼과 누가 시장을 차지할 것이냐이다. 과거 방송과 통신 영역이 충돌했듯이, 방송과 MCN이 충돌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³ 시장의 확산에 따라 커지는 또다른 논란은 법제도의 개입이다. 시장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일탈(逸脫)이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래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인터넷방송 VJ들이 선정적이거나 엽기적인 행위를 하고, 이용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해 방송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속 및 대책 마련 필요”⁴

이와 같은 일탈에 대해 BJ는 어떤 책임을 지며, MCN으로 알려진 사업자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기 쉽다.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존 틀에서 보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규제를 통해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규제 논란에서 개인방송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신으로 볼 것인지, 방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도 다르기 때문이다. 방송이라면 방송이 갖는 공익목적에 따라 다양한

1 MCN 및 개인방송의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유재흥·김윤명,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 확산 동향, 월간소프트웨어중심사회, 2015.11. 참조.

2 매경이코노미, 1842호, 2016, 27면.

3 “크리에이터와 MCN 업체들은 무섭게 성장하며 기존 미디어들을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여기에 MCN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1인 창작자도 대형 제작사에 버금가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서희, 1인 미디어 이끄는 MCN, 방송·영화를 넘본다, 한국일보 2016.2.11.일자.

4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2., 96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⁵

저작권법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통신 영역에서는 상업성을 용인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개인방송의 일탈에 대해 법적인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도나 권고와 같은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어떠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관련된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II. 개인방송의 법적 성격 - 개인방송은 방송인가? 통신인가? 아니면, 혼합형 서비스인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그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촬영한 콘텐츠나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방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방송법상 개인방송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이상의 정의로 보건대, 개인방송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단

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나 이동멀티미디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는 없다.

2. IPTV법상 개인방송

방송법 이외에 살펴볼 수 있는 법률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함)이다. IPTV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방송과 유사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실시간 개인방송과 녹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개인방송(엄밀히 말하자면 통신이 된다)도 포함된다. IPTV사업자는 방송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서비스사업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IPTV법상 개인방송은 방송콘텐츠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3. 저작권법상 개인방송

방송법 체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방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 인터넷과 같은 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제3의 영역일 수 있는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상과 같이, 저작권법상 개인방송은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이 아닌 전송으로 볼 수 있다.

4. 정리 - 개인방송은 2중적 지위를 갖는다

각 유형에 대해 법적 정의로 볼 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의 영역에는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IPTV법상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방송

5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 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다.” 현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헌법불합치,합헌]

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방송은 음만이 아닌 영상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방송이 음만을 송출하는 웹캐스팅이라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⁶ 결론적으로 개인방송은 저작권법상 전송과 IPTV법상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라는 2중적 지위를 갖는다.⁷

Ⅲ. 개인방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

개인방송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는 방송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작권법과 IPTV법의 2중적 지위를 갖는 개인방송은 법적 쟁점에서 간단하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과 음란행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가능한가?

저작권법은 방송의 공익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들 수 있다. 비영리적인 목적(비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하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J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받거나 MCN 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별도 대가(代價)를 받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로 봐야한다. 이 경우 저작권상 제한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 물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개인방송이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 등을 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방송 규정을 통해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음악 라이선스

방송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콘텐츠는 음악이 주류를 이룬다. 짧은 시간에 소비되는 특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BJ가 제공하는 음악의 이용조건이 공정이용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을 BGM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면 BJ가 개별적인 이용자로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플랫폼사업자가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신탁관리단체에 일괄 지불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비용을 징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효과적이겠지만 BJ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전에 플랫폼사업자와 BJ간 협의가 필요하다.

3. 음란행위

저작물의 이용과 달리, 음란물을 전시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제44조의7). 이는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공연전시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여 공연전시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링크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공연음란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⁸

6 다만,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음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와 영상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송의 영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한다.

7 “신기술이 나온다고 그에 따른 신규매체를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규정이 신기술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종류별로 적정한 영역을 구분하고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정태, 방송법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88면.

8 동 판결은 “①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②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③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④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위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전시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링크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링크를 클릭해야만이 해당 사이트 내지 영상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본 판결은 링크가 갖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⁹

4. 저작권 침해물의 링크

저작권을 링크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링크는 단순하게 저작물이 링크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BJ가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사업자의 방조책임도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링크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¹⁰

IV.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BJ가 활동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MCN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개인방송의 송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할까? 단순한 플랫폼 중개업자로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유사한 지위로서 책임을 져야할까?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로서 책임을 져야할까? 두 법은 면책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방송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1. 플랫폼사업자의 지위

개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기여에 따른 책임은 없을까? OSP 또는 ISP와 유사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필요하지 않는가? BJ가 제공하

9 심의기, 온라인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오프라인상의 범죄이론 연장의 가부, 고시연구, 2003.12, 185면 이하 참조.

10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12, 80면.

는 음란행위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플랫폼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지위를 살펴본다.

플랫폼이란 호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BJ가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MCN이 플랫폼사업자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다. 영상콘텐츠가 공중파나 케이블TV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이지만, 개인방송의 형태라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 구조이다. MCN은 BJ가 개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개인방송은 그 내용에 대해 BJ가 책임을 진다. BJ가 MCN에 소속된 경우라면 MCN은 사용자의 위치에 해당한다. 이 경우 MCN은 사용자 내지 관리 책임까지도 진다. 이와 달리, MCN이 누구나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만을 제공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위치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방송 자체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MCN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2. 플랫폼사업자의 책임범위

MCN이 OSP로서 공간을 제공하고 BJ가 위법한 내용이나 형태의 개인방송을 하면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ISP로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OSP와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ISP나 OSP나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이나 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은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OSP나 ISP와 달리, MCN과 BJ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3. 공적 중재의 대상인가?

방송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언론중재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09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개정에서 IPTV도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방송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방송은 언론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방송이나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 절차를 밟게 된다.¹¹ 실무적으로 개인방송이 일시성에 따른 이유로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개인방송의 내용물(contents)을 보관토록 하고, 시청자 내지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자율 규제

자율규제는 BJ를 포함한 MCN, 플랫폼사업자가 개인방송을 제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MCN도 BJ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BJ가 스스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칫 개인방송의 규제는 인터넷의 규제와 같이 인식될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¹² 이는 인터넷이 갖는 속성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건대, 개인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을 무시한 것과 다름이 아니다.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위법한 BJ의 행위에 대해 약관 등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플랫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규제기관은 플랫폼사업자에게 입법을 통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V. 결론

개인방송의 법적 성격은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방송이라는 포맷을 갖고 있지만 유통되는 매체가 전파가 아닌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갖는 한계이다. 만약, 방송법상 방송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공익성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익성을 위한 저작권산권의 제한 규정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BJ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시간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자율권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권고는 MCN과 BJ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개인방송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방송법상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BJ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제작과 유통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2
- [2] 김정태, 방송법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3] 매경이코노미, 1842호, 2016.
- [4]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12.
- [5] 심의기, 온라인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오프라인상의 범죄이론 연장의 가부, 고시연구, 2003.12
- [6]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5.
- [7] 이서희, 1인 미디어 이끄는 MCN, 방송·영화사를 넘본다,

11 “위원회의 주된 직무는 방송과 인터넷 내용심의 업무이다. 심의 업무는 무형의 가치를 표현하는 콘텐츠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김정태, 방송법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231면.

12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위헌,각하].

한국일보 2016.2.11.일자.

- [8] 유재홍 · 김윤명,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 확산 동향, 월간 소프트웨어중심사회, 2015.11.

약 력



김 윤 명

1990년 전남대학교 도서관학사
1999년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2007년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2007년~2014년 nhn(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2014년~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SW법제도, SW정책, 인공지능법,
지식재산권법